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법령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원 교수시간 관련 매주 9시간 원칙 폐지(현행 제6조 개정)”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대학이 발전전략과 교원의 중점적 역할에 따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원칙 폐지(현행 제9조 개정)”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직적 운영을 초래함에 따라 학과·학부 기반의 대학 조직원칙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폐지(현행 제13조2 개정)”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시 기존의 교육부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동수업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3 신설)” 등

학생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교 밖 수업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

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장소에서 수업하는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함.

마.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폐지(현행 제15조 개정)”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규제가 교육과정 연계나 학생 과목선택 제한을 유발함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점인정범위를 정하도록 함.

바. “학생 전과 제한 규정 완화(현행 제29조 개정)”

현재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신설 학과나 융복합 학과의 신설에도 같은 학년으로의 전과만 허용되어 2학년 이상 재학생의 전과 역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으로의 전과를 폭 넓게 허용함.

사.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및 신청가능학점 한도 확대(현행 제52조)”

늘어나는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늘리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함.

아.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제한 폐지(별표1)”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총 입학정원의 100분의5)을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26.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60일”을 각각 “30일”로 한다.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의8제1항제2호 중 “학부, 학과”를 “모집단위”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를 “학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학칙으로 정하고 상호 협약을 작성하되,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별표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외국대학이 운영하게 할 수 없다.

1. 제28조제3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교육부장관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을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학정원을 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입학정원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원격수업)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학교 밖 수업 등) 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수업은 학교 소재지에 출석 수업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예정일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동수업 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

2.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

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점인정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동수업 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참여 인원 및 소속, 담당 교원 및 소속, 운영 기간
2.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소재지 및 수업 장소
3. 학생 안전 관리 계획
4.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부담금
5. 그 밖에 협동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 제1항”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범위가 가장 큰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라목)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를 “가목 외의 경우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가. 제 13조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인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2.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3호, 5호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4. 법 제23조 제1항 제6호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제17조의2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해야”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로 한다.

제18조 중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를 “국가”로 하고, 같은 조에 후
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1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을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로 하
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을 기준으로 학생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 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를 “따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정시모집”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교육부령”을 “학칙”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학위논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을 “학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중”으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를 “심사위원이 행하되,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는 학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6항 본문 중 “10의”를 “30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12학점”을 “24학점”으로, “24학점”을 “42학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자(편입학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다)”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학칙으로”로 한다.

3. 모집인원

제58조의3제1항제2호 중 “교육부장관이”를 “학칙으로”로 한다.

제58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모집인원

제58조의6제1항 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을 “분야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학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1의 6호의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를 삭제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6. 제29조제2항제12호	< 삭제 >	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2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별표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5]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제13조의2 관련)

1. 협약서 작성에 필요한 언어 결정

협약서를 작성할 언어는 협약체결 전 결정한다.(상호 간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하되, 한국어는 필수 포함)

2. 협약서 내용에 관한 기준

구분	내용
가. 참여 학생(대상)	외국인으로 하되, 제29조 제2항 7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내국인의 경우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
나.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이 직접 담당하는 강의	교육과정의 1/4 이상
다.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음의 사항	1) 협약의 주체 및 협약 주체의 법적지위 2) 협약의 목적 및 기간 3)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4) 학사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5) 출결 기준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적 등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7)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8) 등록금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업 장소 등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협약내용 준수에 대한 연도별 자체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연간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지1호 서식]

이동수업 운영계획 신고서

(앞쪽)

대학명			
운영 정보	소속대학(원)		
	이동수업 장소		
	이동수업 유형		
	교과목	학점	
	학과(전공)	학위과정 (학사·석사·박사)	
	인원	운영기간	
	수업 장소의 안전성 확보 여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수업 운영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없음
	1. 수업장소 사용 관련 협약서(또는 사용 관련 증빙서류) 1부		
	2. 이동수업 운영 관련 학교 규정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이동수업은 시행령 14조의3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운영 가능합니다.

- 대학명 : 소속 대학을 명시(00대학교)하되, 분교·캠퍼스인 경우 해당 사항을 추가적으로 작성(00대학교(00캠퍼스))합니다.
- 소속대학(원) : 이동수업 승인신청 학과(전공)의 소속 대학, 대학원 명칭을 기재합니다.
- 이동수업 장소 : 이동수업의 장소를 기재하되,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별개의 교과목으로 보아 별도 신고합니다.
- 이동수업 유형 : 아래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중복 가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
 -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 교과목 : 이동수업 대상 교과목을 기재합니다.(별도 교과목의 경우 별개 신고 필요)
- 학점 : 이동수업으로 인정되는 취득 학점을 기재합니다.
- 학과(전공) : 이동수업을 진행하는 학과(전공)를 기재하되, 학과·전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융합학과·무전공 등) 해당 내용을 명시합니다.
- 운영기간 : 운영기간을 명시하되,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수업 운영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업 장소의 안전확보 여부 : 수업장소가 시설물안전법,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안전관계 법령 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유사 시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작성합니다.

협동수업 운영계획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유형 및 협약 기관명	협약형태 []단독협약, []공동협약				
	협약기관명			협약기관 유형	
	협약기간				
	협약기관 소재지(주소)				
	교육 장소(주소)				

기본 정보	교과목				학점	
	인원		소속		운영기간	
	교과목				학점	
	인원		소속		운영기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협동수업 운영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서류명		수수료 없 음
	1. 협동수업 협약서 1부		
	2. 학교 규정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협약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연구기관, ⑦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교육 장소

- 협약기관 소재지와 같은 경우, '상동' 으로 기재
- 협약기관 소재지와 다른 경우 장소(시설)명 / 소재지를 함께 기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교설립 등) ① ~ ⑥ (생략)	제2조(학교설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 ----- ----- ----- -----.
1. 학교의 폐지: <u>60일</u>	1. ----- <u>30일</u>
2. 학교의 위치 변경: <u>60일</u>	2. ----- <u>30일</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학교헌장)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u>	<u><삭 제></u>
5. <u>교직원의 인사운영·복지후생에 관한 계획</u>	<u><삭 제></u>
6. <u>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u>	<u><삭 제></u>
7. (생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 ② (생략)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9조(학교의 조직) ① (생략)

-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모집단위 -----

3.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

학칙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학교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할 수 있다.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
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
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국내대
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
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
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 ② (생략)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
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

이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내대학이 하나 또는 둘 이상
의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_____

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설>

----- 학칙으로 정하고 상호 협약을 작성하되,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별표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외국대학이 운영하게 할 수 없다.

1. 제28조제3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교육부장관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학정원을 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입학정원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제14조의2(원격수업)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3(학교 밖 수업 등) 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수업은 학교 소재지에 출석 수업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예정일 2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동수업 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

2.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점인정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동수업 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참여 인원 및 소속, 담당 교원 및 소속, 운영 기간
2.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소재지 및 수업 장소
3. 학생 안전 관리 계획
4.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학과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의 부담금
5. 그 밖에 협동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 제1항 -----

----- 말하며,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 인정범위가 가장 큰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

가. 제 13조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인정하는 학점 인정의 범위 이내

<삭 제>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다. 교육부장관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가 국내대학교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

<삭 제>

나. 가목 외의 경우 : -----

-

2.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3호, 5호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4. 법 제23조 제1항 제6호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삭 제>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2.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3. 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
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
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
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
설>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
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
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

제18조(자료의 요구) -----
----- 국가-----

----- . 이 경우 교
육부장관은 학교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삭 제>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
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
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경영등관련전문대학
원) ①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
대학원 중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
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
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
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
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
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금융전문대학원 : 금융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
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삭 제>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
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
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
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
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④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
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
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
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에 대한 평가) 교육부장관은 경
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
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경

<삭 제>

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협동과정) ①법 제29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수업연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학대학·치과대학

<삭 제>

제25조(수업연한 등) ① -----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 · 한의학과 · 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② · ③ (생략)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

-----.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

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

다만, 사이버대학은 신입학 또
는 3학년 편입학을 기준으로 학
생정원을 정할 수 있으며, 「사
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
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②
(생 략)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
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
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
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 ⑦ (생 략)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
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
등으-----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 따라 -----

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
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
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
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
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
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③ · ④ (생 략)

제43조(학위의 종류) ① (생 략)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
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

-----.

② -----

따라 -----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정시모집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학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학칙-----
-----.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

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
 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
 법에 의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
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
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제48조(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 ~ ⑤ (생 략)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
 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

 --- 학위논문-----
 -----.

 -----.

②----- 학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중

 ----- 심사위원이 행
 하되,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
 사위원의 수는 학칙으로 정한
 다.

<삭 제>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30의 ---

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⑦·⑧ (생략)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6조의2(교원양성대학교 발전

---. -----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 24학점 ---
--- 42학점-----.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 법 제33조의 입학
자격을 충족하는 자(편입학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원
양성대학교의 공동 발전에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교
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원양성대학교의 장 공모
방식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
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양성대학교 특성화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대학교 학생 및 교
원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원양성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
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4분의 1은
교원양성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
람으로 한다.

1. 각 교원양성대학교 총장

2. 교원양성대학교 교수 대표 1명

3. 교원양성대학교 졸업생 대표 1명

4. 시·도 교육감 대표 1명

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
하며, 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
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발전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⑦ 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
양성대학의 유치원·중등학교
교원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⑧ 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양성대학교에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
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통령령 제23485호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발전위원회의 설치일부터 3년
간 유효함]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
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
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
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
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
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

-----.

1. · 2. (생 략)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 7.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
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
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
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1. · 2. (현행과 같음)

3. 모집인원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
이 9개월 이상인 ---.

<삭 제>

<삭 제>

<삭 제>

학력인정과정의 입학·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
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
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
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
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
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
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
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
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삭 제>

④ -----

-- 학칙으로 -----.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
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
위심화과정)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생략)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 5. (생략)

②·③ (생략)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학칙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모집인원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 등) ① -----

----- 분야의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등을 고려하여 <u>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 <u>학칙으로 정한다.</u> ⑥ <u>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 제4항에 따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964, 6935